의안 번호	376

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1.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376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7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○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, 성북구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수립·보급하여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성북문화재단의 사업, 예산,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의 발굴, 문화·예술의 교육 및 연구

- 성북구 문화자원 발굴과 성북구 2030 문화비전 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·시행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추구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도모
-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 추구

○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

- 지속 가능한 성북구 대표 문화축제 개최 및 기획 공연·전시 활성화 추진
- 다양한 영상문화·생활문화·가족문화 콘텐츠 활성화
- 구민 참여를 통한 동네별 예술마을 만들기 추진
-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예술인·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확대

○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(문화예술시설, 도서관, 미술관, 영화관 등)

-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구민 문화서비스 증진에 기여
-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적 소양 함양 증진에 기여하고 문화 격차 해소에 노력
-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거점 역할을 통해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 공간으로서 주민 친화공간으로 운영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○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[1]에 따라 2025년도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.

출자 ·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의결 의무화 규정

2014. 5. 28.에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규정은 선심성 · 낭비성 출자 ·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,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의무화하였고,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 ·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음.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·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,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임.

○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,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,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,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사업 등 성북구청장이 위탁·지정하는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□ 출연 근거

○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[2]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[3]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,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**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**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3) **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2조(운영재원 등)**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출연 규모

○ 2025년도 출연금은 정책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과 공통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.1%인 9억 6,117만원이 증액된 197억 8,631만원이 편성되었음.

〈2025년도 출연 예산안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	’25년 예산(안)	’24년 예산	증 감	증감률
일반회계	총 계	19,786,314	18,825,138	961,176	5.1%
	문화체육과	3,654,888	3,483,927	170,961	4.9%
	기획예산과	16,131,426	15,341,211	790,215	5.2%

□ 종합의견

○ 본 출연 동의안은 성북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절차 등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동의안으로 판단됨.

○ 아울러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는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,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바,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하여야 할 것임.